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0명)

1. 제안이유

- 영·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탓에 등하교 및 야외 활동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잦고 돌발행동도 많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.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핀란드,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·유아 등의 야외 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.
- 이에 교육감이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(안 제10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교육기본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 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